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69

발의연월일: 2023. 2. 13.

발 의 자:이개호·김영진·신정훈

서삼석 • 이상헌 • 어기구

허 영ㆍ이병훈ㆍ양경숙

김승남 · 오영환 · 김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등).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
	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u>⑤</u>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	<u>⑥</u> <u>제5항</u>
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